

# 본회, 축산업 자조금법 (안) 확정

◇…본회는 지난해 12월 12일 가칭 축산업 자조금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지난 '88년부터 자조금제도 입법을 위한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어 빠르면 금년중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 축산업 자조금법 (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업 자조금을 설치·운영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및 그 생산물과 이들의 가공품을 말한다.

3. “축산업자”라 함은 국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축산물수입업자”라 함은 축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자조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금을 말한다.

6. “업종별 축산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축산물처리장”이라 함은 도축장, 도계장, 우유 및 계란처리장을 말한다.

8. “소비촉진활동”이라 함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조사연구”라 함은 축산물에 대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시장성 및 상품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 이미지 개선, 영양가치 분석 등을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육”이라 함은 축산물의 발전과 축산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축산업자, 축산물 수입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11. “정보제공”이라 함은 축산업 및 축산물 소비촉진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2장 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설치) 축산물의 소비촉진활동,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업종별로 자조금을 설치한다.



제4조(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거출금
2. 축산물수입업자가 납부하는 거출금

제5조(조성) 1) 축산업자와 축산물수입업자는 거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축산업자는 축산물처리장 및 배합사료공장 에서 거출하며, 축산물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은 행에서 거출한다.

3) 자조금의 거출업무는 축산물처리장, 배합사료공장 및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대행한다.

4) 당월 거출된 자조금은 익월 10일까지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송금, 납부해야 한다.

제6조(거출기준) 1) 축산업자의 경우 국내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축산물수입업자의 경우 중량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거출한다.

2) 거출금의 조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축산업자의 경우 국내시장가격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장 자조금의 운용·관리

제7조(운용, 관리 및 집행) 1) 자조금은 업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운용, 관리한다.

2) 업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사업은 업종별 축산단체가 집행한다.

제8조(지도·감독) 농림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제9조(사업) 1)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소비촉진 사업
2. 조사연구사업
3.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4. 신제품 개발 사업
5. 정책개발사업
6. 기타 자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자조금은 소비촉진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신제품개발사업, 정책개발사업, 일반관리비에 각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반환청구) 1) 자조금의 운용이 자조금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될 경우 축산업자는 거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거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반환청구자는 반환청구시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반환청구가 인정된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장 자조금관리위원회

제11조(설치) 자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2조(구성) 1) 위원회는 축산업자, 축산물수입업자, 학자, 공무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업종별 축산단체가 추천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임명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는 축산업자로 임명되어야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1)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조금으로 충당한다. 단 경비는 자조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모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받는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권한과 임무) 1)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의 수립
2. 사업집행에 관한 감사
3.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규약의 제정 및 개정
4. 자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
5. 자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서류 기록의 비치

2) 위원회의 사업과 예산계획의 수립은 업종별 축산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은 공개되어야 한다.

제15조(회의) 1) 위원회에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임시회의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2) 정기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의 수립
2. 사업집행의 감사에 관한 사항
3. 규약의 제정 및 개정
4. 임원 선출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의결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우편, 전보의결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의일정과 의결사항에 관하여 모든 위원과 업종별 축산단체장,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4) 감사는 위원회의 사업 및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장 과태료

제17조(과태료) 1)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6장 보 칙

제1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법 공포 후 자조금제도를 실시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업종은 상당한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 ○